

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5
------------	---

제 출 일 자 : 2002. 1. 30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각종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방법에 있어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거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제증명의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
- 나.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그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3항)
- 다. 기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(안 제8조제1항 제1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02. 1.10 ~ 1.29(주민제출의견 없음)

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,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
- ③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증명발급 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제1호중 “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